

**2024년 세종보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동권 정책토론회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책토론회**

- 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 주최 :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시 최종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 ☐ 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 의회
☐ 주관 :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	송주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 인사말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 축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김재설 (세종시장장애인부모회 회장)
좌장	조상호 (새로운 생각 연구소 소장)
4. 주제발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5. 토론자	1.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2.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3. 장효창 (권중일 해복투 노동자) 4. 조은소리 (전권협 사무국장)

인사말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최중증 장애당사자들의 노동할 권리에 깊게 고민하는 토론회에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생존권,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로,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직무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 경우 일반적인 일자리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이동권 캠페인, 정책 제안, 인식 개선 활동 등 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이동권, 복지권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 전남, 전북, 인천, 강원, 광주, 부산, 등 여덟 개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도입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 활동가, 지역사회 옹호 활동가, 정책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도 만삼천명의 약 10%로인 최중증장애인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충분히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차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시가 장애인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빠른 시간에 확보하였듯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또한 타 지역보다 선도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누구든 사회적 약자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이라는 공공의 약속이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며,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인사를 맺음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문경희

Contents

【주제발표】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
(박경석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토 론 문】

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도약을 위해 35
(김현미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 지역사회에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의미 42
(임경미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세종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토론회 장효창 발언문 46
(장효창 / 권중일 해복투 노동자)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현황과 사례 그리고
센터의 역할 48
(조은소리 / 전권협 사무국장)

【주제발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박 경 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 리 중 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DISABILITY
PRIDE Aktion T4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2020년 서울형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작 (박원순 서울시장)

30년 동안의 중증장애인가용 평가 능력, 효율, 시장 중심의 환경에서 실패

Ableism!

중증장애인 노동권리 어떻게 풀 것인가?

능력

Against
Ableism!

최중증장애인 우선고용의 원칙

New
Citizenship
Against
Ableism!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합니다



DISABILITY
PRIDE

A 01 T4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
장애인
개발원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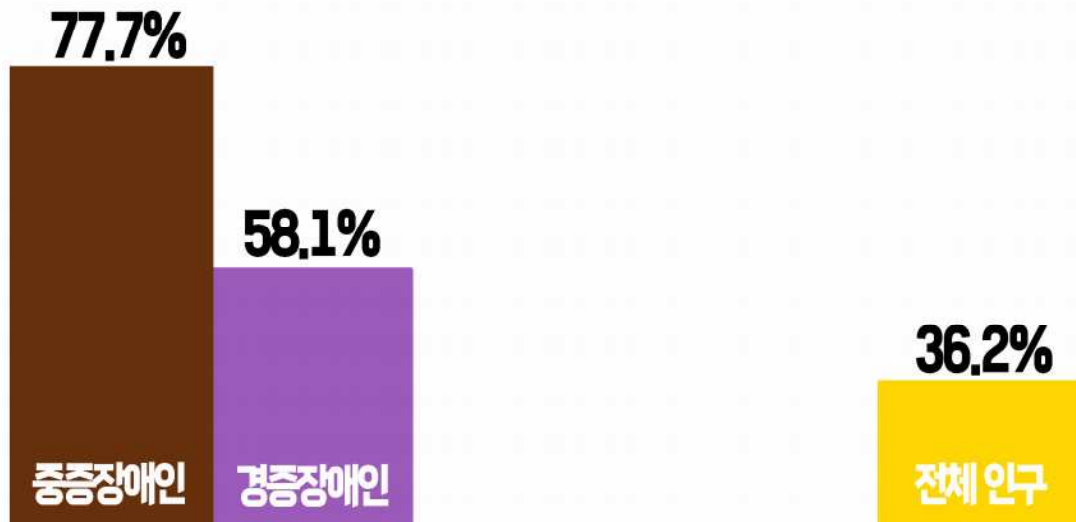
- 한국 장애인운동이 장애인 노동권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 1만 명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는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인 거야
- 그냥 특정 시간 동안 장애인 보호하는 시설인 거지
- 이 사람들 존재에 잘 맞는 노동이란 건 도대체 뭘까
-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적 변화라는 거를, 자기 권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왔잖아
- 그렇게 능력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나요?
- 저는 노동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같은 노동이 보편화되면 그때는 도리어 자본가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몰라

권 리 중 심 중 증 장 애 인 맞 춤 형 공 공 일 자 리 의 미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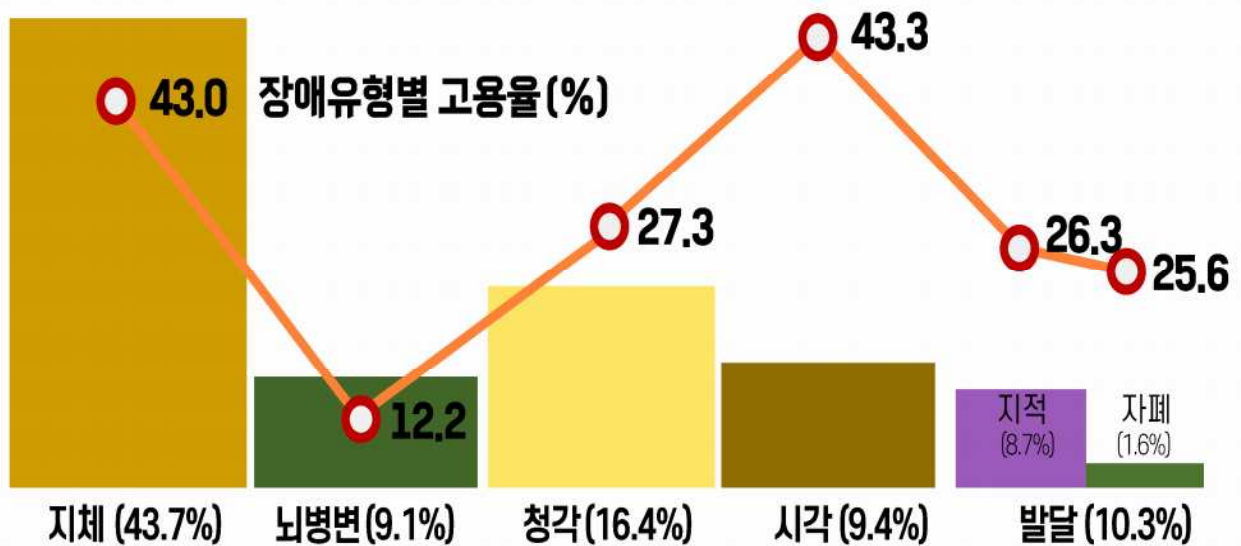
묵묵, 고병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 현황



장애유형별 인구 및 고용율 현황

※ 전체 장애인 중 6대 장애유형별 인구비중(%) = 88.9%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전체 장애인 중 해당유형의 비중(%)

고용율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무능력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3.2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방문(23.3.14)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 수



※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리로 보는 국회의원

서미화 보도자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민주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 02-784-6441 F) 02-6788-6955 E) m2hwaseo@gmail.com

2024년 9월 11일(수)

※배포 즉시 보도가능

발달장애인 '숨통' 조이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조속히 폐지해야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89%는 발달장애인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어
- 해당 장애인 중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 ('23년 12월말 기준)에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워
- 서미화 의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한 심각한 차별문제. 국민의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이후 외국인, 장애인을 넘어 노인까지 차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우려"

9,8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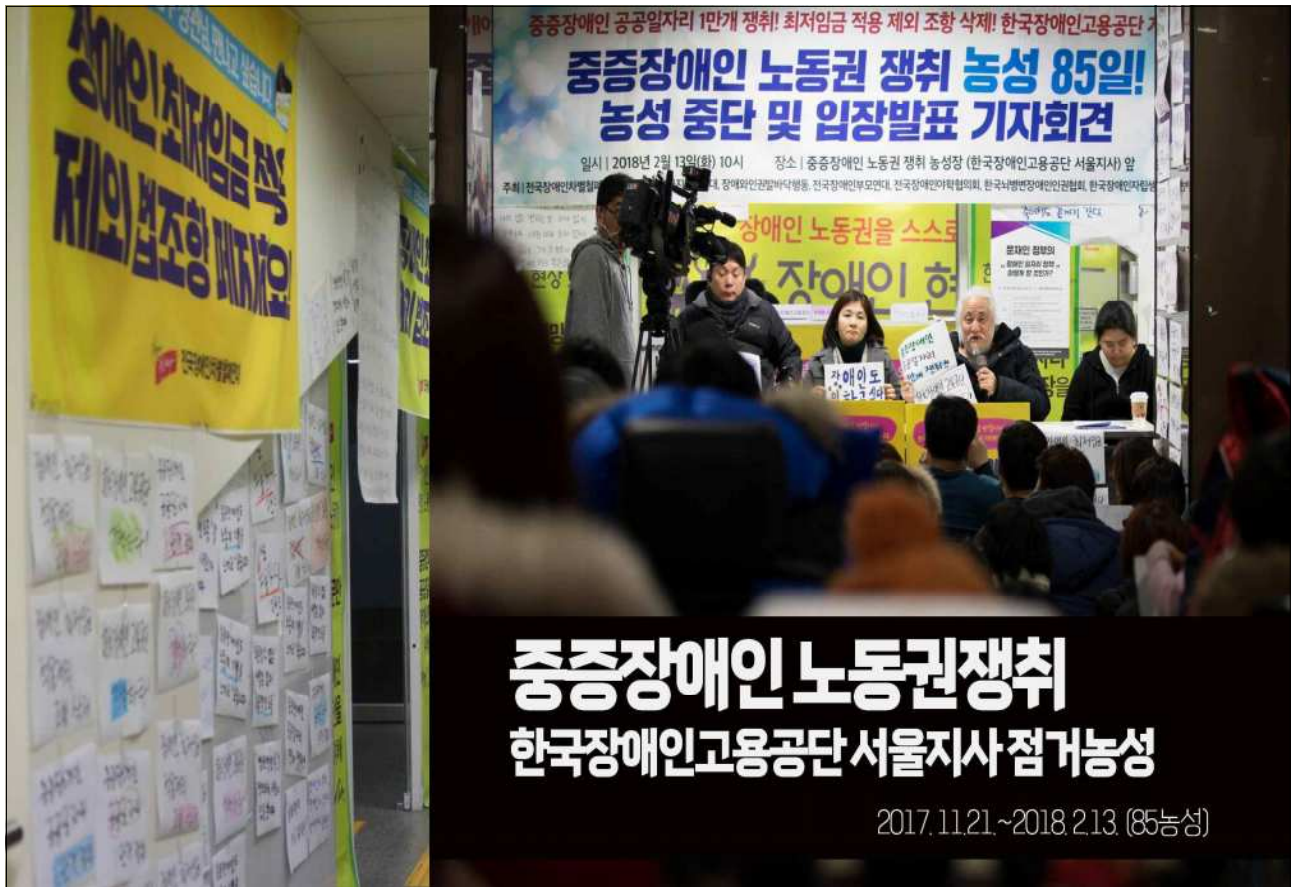
'23

구분	2023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인원 (명)	9,816
전체 근로자 월 최저임금 (원)	2,060,740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임금 (원)	397,710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 수 (개)	662
발달장애유형 인구비율 (%)	89

2018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 실태

평균 나이	34세
장애여성	64%
중증장애인	97%
발달장애인	82%
월평균 노동시간	135시간(일 5.9시간)
월평균 임금	37.5만원(시급3,416월)_ '18년

※ 출처: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회의자료(배포용), 20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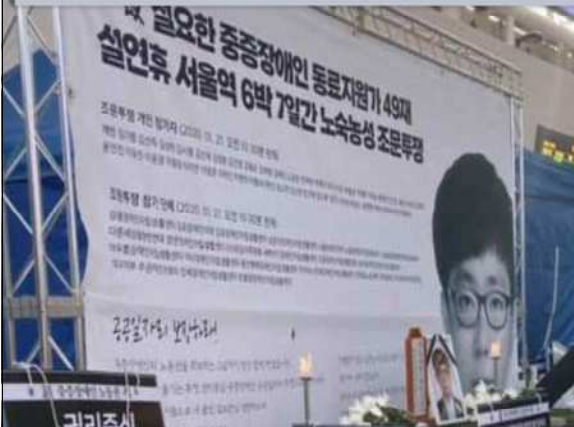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TF 구성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 TF 구성



일시: 2020. 1.22(수) ~ 1.28(화), 장소: 서울역

일시: 2020. 1.28(화) ~ 2.25(화),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증에 장애인 최저임금 못 받아
일자리도 없어서 폐기물 취급
권리중심 일자리 보장된다면
시설에서 누가 사냐

조문 없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무시로 일관하는 노동부 장관
중증장애 일자리 기준 없이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권 리 중 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배경

장애인 권리협약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총회, 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 통과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인권은 위와 같은 조약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되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조약들이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

기존의 국제조약의 한계 (7개 조약)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의의

C

장애인권리협약은 그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등 장애인에 대해 각종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 이를 별도의 인권보장조약으로 성안

R

당사국들은 본 협약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

P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 사회가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의의

D

장애의 문제가 '복지'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 해결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국가사회의 의무로 전환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총50조)

C

총론

제1조에서 제8조까지의 조항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R

실체적규정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P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tools)에 대한 규정

- 33조: 국내적 차원, 전담부서(focal points) 설립 및 국내적 독립 기구의 설립
- 34조부터 40조: 국제적 차원, 당사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의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

D

협약의 효력

제41조 이하는 동 협약의 발효,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 협약의 효력에 관한 모든 절차적 규정에 관한 조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의정서는
협약 50개 조항에 담지 못한 국제적 차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

-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 제도 :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장애인 개인이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정보가 있을 시 비공개로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권한. 방문조사 가능. 조사 이후 그 결과를 정부보고서에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부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

2014년
대한민국 정부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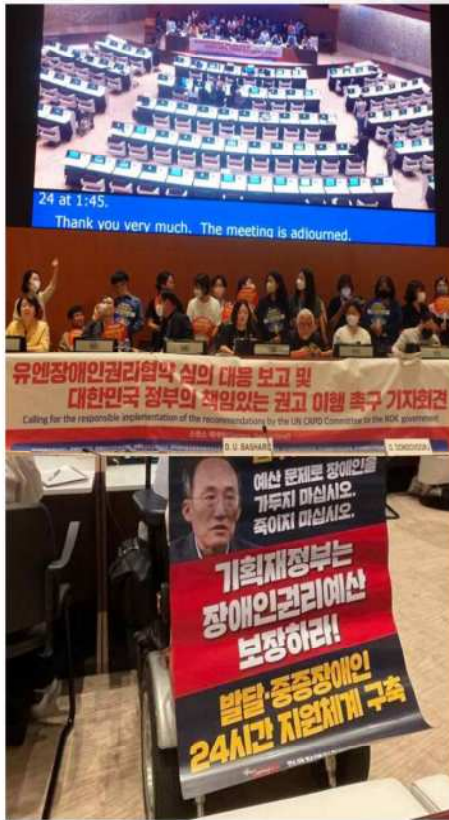
- A.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 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권고(2022.9.9)

1.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하다.
2.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반복적인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다.
3.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4.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도입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부족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 채택, 결과 모니터링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일반대중대상

장애인 권한 정기적인 교육
장애인의 존엄성 존중 증진

캠페인

생산물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실현

**권리
노동**

캠페인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

빵을 만드는 보호작업장과 직무

소보르빵

팥빵

크림빵

밀가루 직무

포장 직무

배달 직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캠페인(Campaign)과 3대 직무



최중증장애인 우선고용의 원칙

Against
Ableism!

최중증장애인

누구인가?

법적 용어인가?

최중증장애인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대상 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최중증장애인

참여가능
수준

직무구성

No 노동시장내

이윤추구

Hate
능력 기준

지역사회변화

돌봄이 아닌
지원 노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적 책무
협업/협력/지지

전담인력
근로지원인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방향	목 표	3대 직무	재정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지역사회환경의 변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변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①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③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활중심
생산성기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기준

시장
경쟁

이윤

실적
효율

공공
협업

**지역
사회
변화**

참여
가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현황

2024년

권리중심노동자 1,266명
예산 총액 15,945,863천원
위탁기관 119개

8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

노동자 1,191명
노동자 75명

9,139,029 천원

2024년 8개 광역지자체

노동자 인원 1,191명
예산 총액 15,149,319 천원



2024년 4개 기초지자체

노동자 인원 75명
예산 총액 796,544 천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예산현황



캠페인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사회, 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예문)

초코파이 광고는 매우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
산불조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자

캠페인(Campaign)의 유래

캠퍼스 CAMPUS: 라틴어 '들판, 평원'

17세기 군사용어로 '상대영토 빼앗기'



©wikimedia

캠페인(Campaign)의 유래



©2008-2017 Wes Candela Photography LLC

18세기 이후

**'특정그룹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조직적 활동'
의미로 사용**

캠페인의 현대적 정의

사회적, 정치적, 혹은 상업적 성과를 기대하고
일정기간동안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활동



공익적 캠페인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일련의 행동

캠페인의 방법



공익적 캠페이너란?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진행자이자, 촉매자이며, 기록자이다

공익적 캠페이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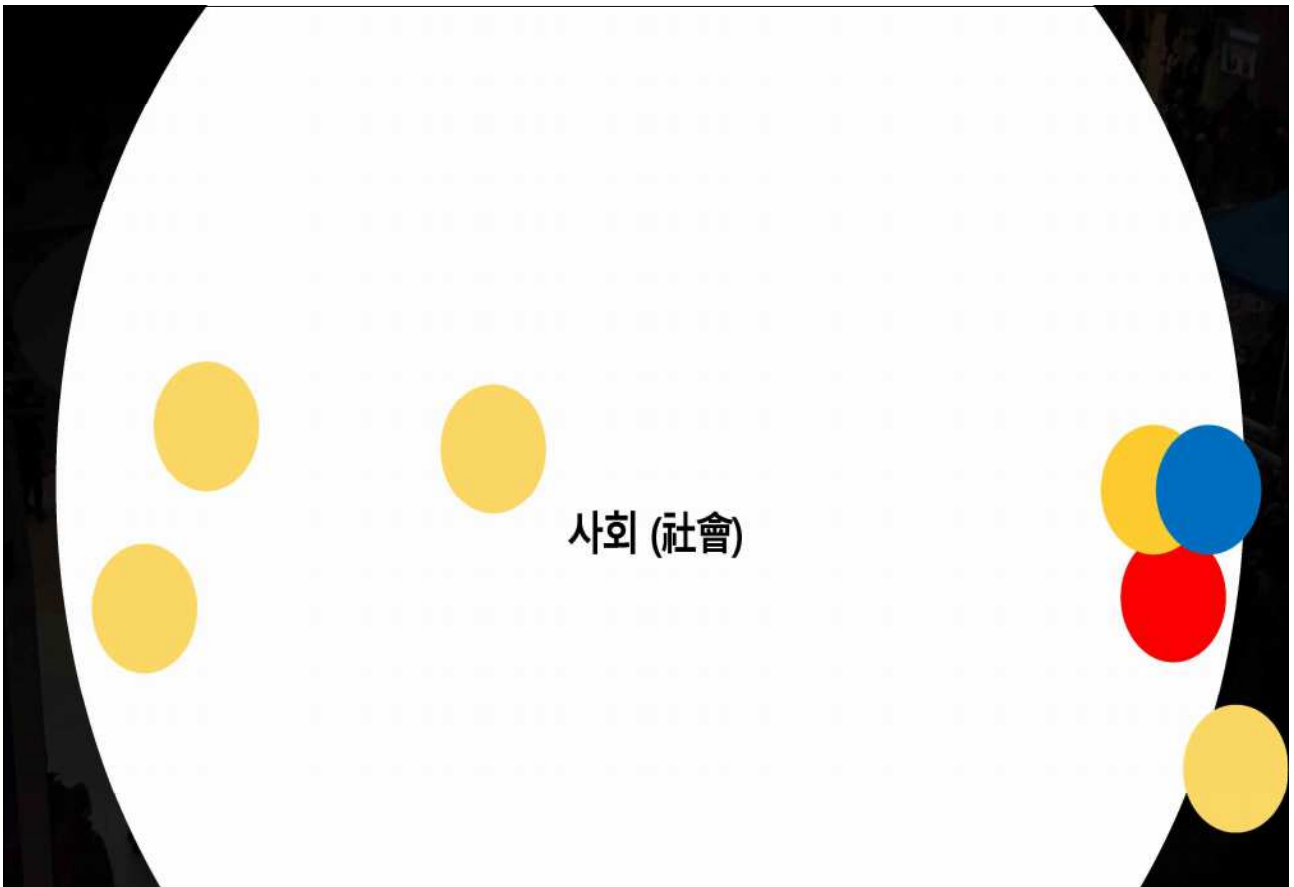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룬다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개척한다



57세, 61세, 66세, 55세... '복직 투쟁' 식발하는 초로의 중증장애인들



사회 (社會)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그만!

혐오는!!

쓰레기통에!

동정은!

집어쳐!!!

이윤보다!

생명을 !!!



【 토 론 문 】

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도약을 위해**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2. **지역사회에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의미**
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세종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토론회 장효창 발언문**
장효창(권중일 해복투 노동자)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현황과 사례 그리고 센터의 역할**
조은소리(전권협 사무국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도약을 위해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나라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에게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장애인에게도 노동과 직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은 단지 본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필요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장애로 인한 고용 기회의 배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련의 법적 조항을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 전략들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과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편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노동권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공공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따르면 국가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해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노동을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낮은 노동생산성과 직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편의시설 및 환경 구축 등의 부담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고용에 제약이 많고, 장애인 노동시장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 진입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로 평가되어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조차 경증장애인에 비해 고용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다양한 근로활동으로부터 배제를 경험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및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¹⁾에 의거하여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유형은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사업이다.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 ('25년 정부안 기준) 〉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아인	미취업 안마사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7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10만원	105만원	56만원		131만원	131만원
일자리수	7,740명	4,075명	19,094명		1,277명	1,360명

※ '25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총 4,99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이후 '24년 현재 총 31,546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연도별 일자리수 및 예산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7	'10	'15	'20	'21	'22	'23	'24	'25안
일자리수	4,990	6,920	14,879	22,396	24,896	27,546	29,546	31,546	33,546
참여자수	3,986	6,717	15,084	22,609	24,507	30,330	32,446	-	-
예산	8,164	20,430	66,203	141,520	159,593	185,315	207,299	222,695	234,510

이처럼 고용능력이 낮거나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전과 근로기회를 제공해 온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율을 확대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장애정도가 극도로 심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방향과 대응책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도입

이에 2017년부터 장애계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공공일자리 확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에서조차 배제되어왔던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의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제적 활동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사업을 도입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 등으로 확산될 만큼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극도로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유형별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며,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기존 장애인일 자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직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은 공공일 자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전국 최초로 시작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에 맞춘 직무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비장애인의 노동기준인 시장·경쟁·효율 위주의 노동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협업·가치 중심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은 2023년 5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 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하고자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어서 2024년 12월 23일, 이번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다. 법안 제안이유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 경기, 경남, 강원 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중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 세종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

현재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 인구유입에 따라 장애인 인구도 증가²⁾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¹⁾이 조사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7%로 전체인구 65.4%보다 29.7%p 낮고, 실업률은 장애인구 5.1%로 전체인구 3.0%보다 2.1%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3.8%로 전체인구 63.5%보다 29.7%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2024년 총 예산액은 24억 5,700만원(국비 12억5,100만원/ 시비 12억600만원)으로 일반형일자리에 77명(전일제 42명, 시간제 35명), 복지일자리에 90명, 특화형일자리에 4명 총 171명이 참여했다.

2) 장애인구 : ('12.12월말) 7,081명 → ('24.6월말) 13,024명 【5,943명 증가】

현재 세종시에서는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사업 외에 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조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서울 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기존 사업 추진 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세종시 현황에 맞는 사업 유형을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종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 현황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고용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일자리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과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세종시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도입에 있어서도 장애의 정도와 일자리, 일자리의 지속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료이며,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지우고 거시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 그들만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 확대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포용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때,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한 걸음이 더 나은 내일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의 논의가 그 발걸음의 의미있는 축적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사회에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의미

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은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모든 권리의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시혜적인 일자리와 적은 수급비로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연명시키는 데 그쳐 왔다.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2018년, 중증장애인들은 85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이 시행되는 등 노동권의 진전을 확인했다. 특히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3대 직무를 구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새 시대를 앞당겼다.

비장애 중심의 고용시장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이 부가적 노동 또는 시혜적 일자리 형태로만 제공되어 왔으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재화 생산이 아닌 권리 생산 노동’이라는 확고한 기치 아래 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의 3대 가치생산 직무를 일자리의 중심에 놓았다. 비장애 중심의 효율과 생산, 그리고 경쟁만을 강요하던 고용시장을 넘어 장애인의 노동이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는 첫 사업 시행 이후 만 5년이 지나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이고 졸속한 사업 폐지에도 불구하고 8개 광역 및 4개 기초 단위까지 사업 시행이 확산되었으며 1,300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권리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각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50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작하게 된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나 비장애인 중심에서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딪혔고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것보다 어려웠던 4년을 보내야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고 더 이상 기다림은 의미조차 상실되어갔다. 하여 지난 2024년 9월 중증장애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추석명절 연휴와 맞바꾼 격렬한 투쟁의 결과로 50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이 2025년에 마침내 시행된다.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담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서미화·조국혁신당 김선민 공동 대표 발의, 이하 권리중심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 낸 역사적 성과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로의 요구다. 2020년 서울시의 시범사업 이후 5년간 중증장애인의 권리 생산 노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노동의 지평을 열어 왔다.

해외에서도 찾지 못할 사례로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식개선을 일구는 혁신적 노동이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사업 형태로 이루어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매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적 제도화를 위한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맞춤형 직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인식제고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주요 직무로 설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복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권리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발굴·창출하고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권리중심특별법안은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를 통해 수행기관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지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의 일자리 사업 속에서 노동자도 수행기관도 사업이 폐지될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던 시간은 이제 과거로 물러나고 있다.

강원, 전남, 전북에서 3년 위탁의 형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최종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참여를 보장하고 있듯이, 권리중심특별법안에서는 최소 3년의 지정·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며 기관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그동안의 중증장애인 노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난 채 놓여 있었다. 우리는 거주시설에 갇혀 사회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거나,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의 투쟁 속에 작은 성취를 쌓아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과도한 실적 요구로 인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그 죽음 위에서 우리는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확보했지만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사업이 폐지되며 400명의 권리중심 노동자가 일순간 해고당해야 했다. 타 지역의 권리중심 노동자들은 그 해고의 물결이 전해질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과 탄압 위에 우리의 권리를 쌓아 올려 2024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1,300명에 달하는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보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의 정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언제나 비상사태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일자리 또한 마땅한 국가의 책임이다. “장애인의 시민권은?” 이 특별법은 묻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과연 이 나라의 시민일 수 있는가, 시민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말해 왔다. “이것도 노동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도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은 전진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다, 우리가 시민이지 않고는 국가의 존재 의미는 없다!” 국회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이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를 명심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 제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제안하고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 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노동을 보조적 역할로만 한정해 왔던 경쟁·효율 중심의 고용 형태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는 일자리로서, 기존의 비장애중심의 기준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춰진 직무를 구성하여 ‘노동할 권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일자리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당사국은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아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22.3% 밖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다.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 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지역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토론회 장효창 발언문

장효창(권중일 해복투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의 해고 노동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투쟁의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400명에 달하는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집단해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을 빼앗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짓밟은 처사였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도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해고의 순간, 저는 '장애인은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의 냉혹한 선언을 들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대의 힘으로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결성하며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되찾는 것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투쟁은 장애인 노동의 권리를 다시 쓰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를 폐지한 것은 장애인을 다시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밀어넣는 퇴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퇴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서울에 2,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빼앗아 버리는 이 싸움에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기울어진 이 사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장애인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최중증장애인도 노동하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현황과 사례 그리고 센터의 역할

조은소리(전권협 사무국장)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등) 등의 주체가 지원하고 있다.

〈표〉 장애인일자리 및 취업 지원

구분	지원 분야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일자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서울에서 2020년 시범사업 시작)		강원도, 강원 춘천시, 경기도, 경기 시흥,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광주 서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북 제천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종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준비 최종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8조 인식제고에 근거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캠페인 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2014년 1차, 2022년 2차·3차)³⁾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3대 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지역에서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2020년부터 진행한 서울지역이 사업폐지로 진행하지 않게 되었지만, 부산,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8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중이며 노동자 총 1,266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중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진행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전라남도는 2022년 7개월간의 시범사업 후 2024년 현재 8개 시·군에서 14개 단체에서 장애인 노동자 120명, 전담 인력 24명으로 12개월의 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표〉 연도별·지역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수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260	275	350	400	폐지
경기		25	200	500	665
전남			82	93	120
전북			10	76	134
경남			10	100	117
강원				41	41
인천				71	70
부산					32
광주					12
강원춘천			40	40	40
충북제천			10	10	10
광주서구				15	20
경기시흥					5

3)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CRPD_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22년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

〈표〉 '24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현황

시도	시행 주체	사 업 량		전담인력 배치기준	사업기간	수행 기관 선정	예산	보조 사업자수	예산 매칭
		참여자	전담인력						
경 기 도	광역	665명	66명	10명당 1명	11개월	매년	9,139,029천원	34개소	도비 전액
강 원 도	광역	41명	5명	8명당 1명	12개월	매년 (원주는 3년 위탁)	610,858천원	4개소	도비 50%, 기초 50%
전 라 북 도	광역	134명	10명	기관당 1명	12개월	매년 (익산은 3년 위탁)	1,246,595천원	11개소	도비 20%, 기초 80%
전 라 남 도	광역	120명	24명	5명당 1명	12개월	매년: 광양, 나주, 무안, 신안 3년: 목포, 순천, 여수	2,089,000천원	16개소	도비 30%, 기초 70%
경 상 남 도	광역	117명	0명	(미지원)	9개월	매년	996,000천원	27개소	도비 30%, 기초 70%
부산광역시	광역	32명	0명	(미지원)	10개월	매년	474,120천원	7개소	도비 50%, 기초 50%
인천광역시	광역	70명	7명	10명당 1명	10개월	매년	520,386천원	11개소	시비 50%, 기초 50%
광주광역시	광역	12명	2명	5명당 1명	5개월	매년	73,331천원	2개소	도비 전액
춘 천 시	기초	40명	4명	10명당 1명	10개월	매년	402,760천원	4개소	시비 전액
제 천 시	기초	10명	1명	10명당 1명	12개월	매년	100,363천원	1개소	시비 전액
시 흥 시	기초	5명	1명	5명당 1명	8개월	매년	63,120천원	1개소	시비 전액
광 주 서 구	기초	20명	4명	5명당 1명	8개월	매년	230,301천원	1개소	구비 전액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의미

- 헌법(23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27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공공업무 수행**)로 명시
-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참여 가능한 수준의 활동**)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의

-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비장애중심의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일자리

□ 일자리 참여자 지원자격 및 수행직무

○ 일자리 참여자 지원 자격

- 참여자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
- 탈시설(준비)장애인 : 탈시설 정책과 연계

○ 수행직무

구 분	직 무 내 용
권익옹호활동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및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창작활동 ▶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인식개선활동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활동 등 ▶ 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악기 연주 등 특기 시연

○ 우선선발 기준(경합시 적용)

- 1순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최근 3년 이내('20년~'22년)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최종증장애인
- 2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최종증장애인 우선)
- 3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최종증장애인 우선)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최종증장애인 우선)
- 5순위 : 여성세대주(가장), 중증장애인(최종증장애인 우선)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은 재정일자리 및 타 지역 참여경험 모두 포함(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조화로 확인)

□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전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내용 발췌)

- 근무기간 : 12개월(1월~12월) / 단, 보조사업자의 참여자 선정결과에 따라 근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중도참여자 등)
- 근무조건: 1일 3시간/15시간, 월 759,980원 지급(최저시급 9,620원, 주휴수당)
- 근무일 : 주5일 근무
 - 주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직무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예 : 월요일 4시간,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3시간)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 **기존 일자리와 차별성 확보**

- 물품 생산활동과 판매 행위 지양(기존의 직업 재활의 개념 X)
- 장애인의 권리 생산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 **최종증장애인 우선 고용**

- 시장에서 배제된 최종증장애인을 우선으로, 능력·효율의 중심이 아닌, 재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공공영역 일자리 보장

□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연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
- 장애인 거주 시설과 연계
-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와 연계

□ **노동자의 지속적인 고용보장**

-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승계 (연속적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 보장)

□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현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100% 지자체 예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원, 근로 지원인 파견으로 위태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은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명문화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안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광주 남구는 오영순 구의원이 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명문화 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전라남도는 김미경 도의원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 12월 23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공동발의)가 발의되었다.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서미화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말함(안 제2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제6조).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의 개발 및 발굴 등 권리중심공공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정당한 편의 제공, 홍보,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매년 점검·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안 제17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활동
 - 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유해한 관습 등을 근절하는 활동
 - 다. 장애인의 능력, 가치 및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 라. 사업체 등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
 - 마.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중매체 등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
 - 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조정하거나 개발·창조·재생산하는 활동
 - 사. 사회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활동
 - 아. 그 밖에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으로서 장애인 공동의 이익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3. “공공기관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발굴·창출하고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 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의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실태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시 계획
2. 전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결과 및 평가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증감 등 현황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 등 현황

③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 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연계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적·성과 관리
5.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대상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계약의 변경·해지, 고용계약 외의 업무 강요 등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직무, 급여 등 근무조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교육)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당한 편의제공 등)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및 지원센터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4. 그 밖에 휴게 시설 및 출·퇴근 이동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직무 재배치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홍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등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융자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점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기획,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 및 민간 기업·법인·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누설 금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